

통영적십자병원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

발주기관

통영적십자병원

용역명

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

용역기간

2026. 9. 1. ~ 2027. 8. 31.

이 특수조건은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과 국가계약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통영적십자병원의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업무에 적용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 및 적용범위)

- ① 이 특수조건은 통영적십자병원(이하 “병원”이라 한다)이 발주하는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이 특수조건은 계약서, 과업내용서, 산출내역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와 함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- ③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」, 「의료법」,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계 법령과 병원 규정에 따른다.

제2조(계약문서 및 해석의 우선순위)

계약내용의 해석은 ① 계약서, ② 특수조건, ③ 과업지시서, ④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순서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란 병원과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- ② “세탁물”, “오염세탁물”, “기타세탁물”, “세탁금지 세탁물” 및 “처리업자”의 뜻은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③ “의료기관세탁물”에는 병원이 제공하거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복, 침구류, 수술포·가운류, 직원 근무복, 커튼 및 그 밖에 세탁이 가능한 섬유제품을 포함한다. 세부 품목은 과업지시서와 병원의 지시에 따른다.

제4조(신의성실 및 청렴의무)

-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·이행 과정에서 금품·향응 제공, 담합, 알선·청탁 및 그 밖에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·해지, 입찰참가 제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장 용역수행 및 위생관리

제5조(영업자격 및 유지의무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관할 행정기관에 적법하게 신고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의 자격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·장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처리업 신고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병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신고사항의 변경, 행정처분, 휴업·폐업, 시설·장비의 중대한 고장 또는 용역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병원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착수 및 수행계획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개시 전까지 수행책임자, 비상연락망, 수거·납품 일정, 인력·차량·장비 현황,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계획, 비상대체계획이 포함된 착수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병원은 제출자료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거나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수행책임자나 주요 차량·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병원에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또는 병원이 지정한 요일·시간·장소에 세탁물을 수거하고,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지체 없이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.
- ② 수거 및 납품 시 병원 담당자와 품목·수량·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병원의 진료 및 병동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량을 유지하여야 하며, 감염병 발생, 환자 증가 또는 긴급상황에는 병원의 긴급 수거·납품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병원 구내 출입 시 차량 동선, 감염관리, 보안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환자·보호자와 병원 업무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.

제8조(보관·운반 및 교차오염 방지)

- ① 계약상대자는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, 수거 전 세탁물과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기·포장·구획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.
- ② 운반차량은 의료기관세탁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세탁물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유출·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차량으로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적재고와 운반용기를 소독하고, 소독일시·소독약품명·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록하여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④ 세탁물의 분류·보관·운반 과정에서 바닥 접촉, 청결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의 혼재 및 그 밖의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세탁·소독 및 품질기준)

- ① 오염세탁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하며, 세탁·행균·건조·다림질·접기·포장 전 과정에서 세탁물의 종류와 오염도에 적합한 공정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② 완성된 세탁물은 오염, 얼룩, 악취, 이물질, 습기, 세제 잔류, 변색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정리·포장되어야 한다.
- ③ 품질기준에 미달한 세탁물은 병원의 통보를 받은 즉시 회수하여 추가 비용 없이 재세탁·재소독하고, 필요한 경우 대체 세탁물을 공급하여야 한다.
- ④ 세탁에 사용하는 세제·소독제 등은 관계 법령과 제품 사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환자와 직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0조(세탁금지 세탁물의 처리)

- ① 계약상대자는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에서 정한 세탁금지 세탁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인수해서는 안 된다.
- ② 수거 과정에서 세탁금지 세탁물 또는 날카로운 물품 등 위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즉시 병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세탁금지 세탁물은 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며,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.

제11조(재위탁의 제한)

-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.
- ② 다만, 정전·단수·기계고장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절차

를 이행하고 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법한 처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. 긴급하여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재위탁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, 재위탁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2조(시설·장비·종사자 관리)

① 계약상대자는 세탁물의 종류별 분리처리, 소독, 세탁, 건조, 포장 및 운반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감염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·착용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종사자의 감염, 안전사고 또는 작업중단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세탁물 수선)

① 계약상대자는 세탁과정에서 발견한 봉제선 풀림, 단추 탈락, 경미한 찢어짐 등 통상적인 수선이 가능한 세탁물을 추가 비용 없이 수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.

②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세탁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사유와 수량을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(분실·훼손 및 혼입품)

① 계약상대자의 보관·운반·세탁 과정에서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동일 또는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병원이 인정하는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세탁물에서 환자·직원 소지품, 의료기구 또는 그 밖의 물품이 발견된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·폐기하지 말고 별도 보관하여 즉시 병원에 인계하여야 한다.

③ 분실·훼손에 대한 귀책과 배상기준은 인수인계 기록, 내용연수, 사용상태 및 구입가액 등을 고려하여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되, 합의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.

제3장 품질관리 및 비상대응

제15조(기록관리 및 자료제출)

① 계약상대자는 수거·납품 내역, 세탁·소독 처리내역, 차량 및 운반용기 소독일지, 감염예방교육 실적, 민원·재세탁 내역 등 관계 법령과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병원은 계약이행 확인, 감염관리, 감사 또는 관계기관 점검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현장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상대자는 제출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.

제16조(검사 및 시정조치)

① 병원은 납품 세탁물의 수량·청결상태·포장상태·수선상태 및 계약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.

② 검사 결과 미이행 또는 품질미달이 확인된 경우 병원은 재세탁, 교환, 보완,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병원은 미이행분 감액,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의 해제·해지 등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7조(비상상황 및 업무연속성)

① 계약상대자는 정전·단수·화재·침수·기계고장·감염병·노사분규·운반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 수행이 어려운 경우 즉시 병원에 통보하고 비상대체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는 예비인력·예비차량·대체설비 등 업무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병원의 진료와 병동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병원이 대체업체를 이용하거나 긴급 조치를 시행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병원은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거나 지급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.

제18조(감염·안전사고 보고)

- ① 세탁물의 유출, 오염 확산, 교차오염, 종사자 감염노출, 차량사고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확산방지 및 인명보호 조치를 하고 병원에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경위, 조치내용, 피해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서면보고서를 병원이 지정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기관 신고가 필요한 사고는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그 결과를 병원에 알려야 한다.

제4장 계약관리 및 대가 지급

제19조(계약금액 및 포함비용)

- ① 계약금액은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 따르며, 월정액에는 세탁·소독·수선·포장·수거·운반, 인건비, 장비·차량 유지비, 세제·소독제, 보험료, 각종 세금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원가 상승, 인력·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임의로 처리비용을 인상하거나 용역 수준을 낮출 수 없다.
- ③ 다만,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거나 병상수·병동 운영·과업범위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0조(월별 검사 및 대가 지급)

-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을 완료한 후 월별 실적보고서, 인수인계 기록 및 병원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② 병원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약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월별 대가를 지급한다.
- ③ 월별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.
- ④ 미이행, 품질미달, 용역중단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병원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·정산하거나 지급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.

제21조(지체상금 및 손해배상)

-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병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과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, 환자,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·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수행에 적합한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고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계약의 해제·해지)

-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, 그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감염확산 우려 등 긴급하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1.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자격을 상실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2. 무단 재위탁, 세탁금지 세탁물 처리, 오염·청결 세탁물 혼재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
 3. 반복적인 수거·납품 지연, 품질미달 또는 시정요구 불이행으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4. 허위자료 제출,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안전·감염사고를 은폐한 경우
- ② 계약의 해제·해지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안 및 기타

제23조(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)

- ①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용역수행 중 알게 된 환자·직원 정보, 병원 운영정보 및 그 밖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② 환자명, 병실, 진료정보 등이 표시된 세탁물·표찰·문서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병원에 인계하고 복사·촬영·보관해서는 안 된다.
- ③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되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
제24조(권리·의무의 양도 제한)

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·의무 또는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25조(분쟁의 해결)

- ① 계약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.
-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「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」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, 소송에 의하는 경우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26조(특수조건의 효력)

- ① 이 특수조건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이행 완료 및 정산 시까지 적용한다.
- ②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특수조건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적용 법령 및 기준(작성기준일: 2026. 7. 20.)

-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 [시행 2026. 3. 4.]
- 「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」 [시행 2026. 4. 30.]
- 「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」 [조달청지침 제16호, 시행 2026. 1. 12.]